

#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3. 6. 13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187
----------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구청장(디지털도시과)

나. 상정의결

-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13.)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

가. 제안이유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기재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구체화하여 로봇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로봇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5조)
- 로봇산업 육성사업 추진(안 제7조)
- 사무의 위탁, 국제협력의 촉진(안 제8조 및 안 제9조)

다.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예산조치 : 유사 조례를 제정 · 운영중인 타 지자체 참조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1) 제정 조례안 별첨
- (2) 입법예고(2023.4.28. ~ 2023.5.18.) 결과,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본 조례안은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우선적으로 입안하여 제정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sup>1)</sup>를 토대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본 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위원회가 필요할 것인데, 본 조례안은 안 제5조제3항에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어 향후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문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러한 자문위원회 관련 근거 조문 없이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면, 그것은 행정

1)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3.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이와 관련된 학술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능형 로봇유통현장의 실행에 관한 사항
6. 지능형 로봇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사업방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그 기반조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부적 업무계획 또는 방침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며, 로봇산업 조성 행정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하거나 표방할 때, 그 입지가 견고하지 않을 수 있음.

□ 안 제7조(육성사업 추진)은 제1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업들을 열거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함.

<p>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p>	<p>제7조(육성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로봇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증 사업</li> <li>2. 로봇산업 기반 조성 사업</li> <li>3. 로봇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li> <li>4. 로봇 관련 공모사업</li> <li>5. 로봇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li> <li>6. 로봇 관련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사업화, 금융 프로그램 지원</li> <li>7. 로봇 전시회, 경진대회, 체험 프로그램 등 로봇 관련 행사 개최</li> <li>8. 로봇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li> <li>9. 로봇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li> <li>10.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li> </ol>
<p>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7조(육성사업) 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로봇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사업</li> <li>2. 로봇산업 기반 조성 사업</li> <li>3. 로봇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li> <li>4. 로봇 관련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사업</li> <li>5. 로봇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li> <li>6.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li> <li>7. 로봇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li> <li>8. 로봇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li> <li>9. 산업용 로봇 등 로봇과 관련된 안전 교육</li> <li>10.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li> </ol>
<p>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p>	<p>제14조(사업)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로봇 관련 연구 및 조사, 정책 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li> <li>2.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li> <li>3. 로봇랜드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사항</li> <li>4. 로봇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li> <li>5. 로봇문화 확산 및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li> <li>6.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 조례안 중요사항 중 하나는 추진사업이라 할 것인데, 강남구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조례 사업과 다소 비슷하지만, 실제 추진 중인 실증사업과 공모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어 다소 차별성이 있으며, 인천광역시도 사업추진 전담기관을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업 내용은 강남구 조례안보다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임.

- 기타 사항으로 강남구 조례안은 안 제8조에 “사무위탁 근거”를 반영하였고, 안 제9조에 “국제협력의 촉진”을 규정하고 있는데, 새로운 로봇산업 동향과 정보를 신속하게 수렴할 수 있는 국제협력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것임.
- 조례안을 제출한 디지털도시과가 추산한 조례안 시행을 위한 비용추계는 향후 5년간 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연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합계
구분	○ 기업지원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 로봇실증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 행사개최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 인력양성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1,200,000
	소계(b)	640,000	640,000	640,000	640,000	640,000	3,200,000
□ 총 비용(a-b)		640,000	640,000	640,000	640,000	640,000	3,200,000

- 추계 사업항목을 보면, 디지털도시과는 향후 4개 사업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본 비용추계는 대략적인 전망으로 보이며, 엄정한 추산은 로봇산업 동향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은 강남구가 기초지자체로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의 조성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극적인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입법과제들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선 및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끝.

#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87
----------	-----

제출년월일 : 2023. 6. 1.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디지털도시과

## 1. 제안이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기재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구체화하여 로봇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로봇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5조)
- 라. 로봇산업 육성사업 추진(안 제7조)
- 마. 사무의 위탁, 국제협력의 촉진(안 제8조 ~ 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나. 예산조치 : 유사 조례를 제정·운영중인 타 지자체 참조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제정 조례안 별첨

(2) 입법예고(2023. 04. 28. ~ 2023. 05.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 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현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로봇 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로봇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봇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로봇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로

봇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봇산업의 육성 방향 및 목표
2. 로봇산업의 동향 및 전망
3. 로봇산업의 육성 방안
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연구소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실태조사 등의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남구 내 로봇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육성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봇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증 사업
2. 로봇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로봇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로봇 관련 공모사업
5. 로봇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
6. 로봇 관련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사업화, 금융 프로그램 지원

7. 로봇 전시회, 경진대회, 체험 프로그램 등 로봇 관련 행사 개최
8. 로봇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9. 로봇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10.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협력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구청장은 로봇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 용 추 계 서

##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로봇 관련 사업의 추진
2. 비용추계의 전체 : 기 추진중인 로봇관련 사업 예산 반영 및 로봇 관련 예산을 수립한 타 지자체 예산참조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합계
세출	○기업지원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로봇실증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행사개최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인력양성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1,200,000
	소계(b)	640,000	640,000	640,000	640,000	640,000	3,200,000
□ 총 비용(a-b)		640,000	640,000	640,000	640,000	640,000	3,2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지방세수입	640,000	640,000	640,000	640,000	640,000	3,200,000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640,000	640,000	640,000	640,000	640,000	3,200,000

5. 덧붙이는 의견(비용추계서 활용상의 한계)
  - 1)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로봇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된 점, 2)비용추계서를 작성중인 현재 조례안에 근거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추진할 사업의 종류, 사업의 규모 등을 현재 시점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비용추계는 단순 참고 바람
  - 재원조달 방안의 경우 향후 국고보조금, 시·구비 매칭사업 등으로 증가할 수 있음

6. 작성자 : 디지털도시과 행정8급 류덕희 (☎ 02-3423-7926)